



제300회 서산시의회(제2차 정례회)
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

서산시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▣ 서산시장 제출(의안번호 제518호)

2024. 11.

전문위원	사무국장	결 재	행정문화복지위원장

행정문화복지위원회
전 문 위 원

2025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제518호
- 제 출 자 : 서산시장
- 제출일자 : 2024년 11월 14일
-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2. 제안이유

- 자활근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「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자활근로사업
-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 - ▷ 추진근거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 제12조
 - 「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」 제8조
 - ▷ 필요성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저소득층에게 자립능력 향상 및 자활지원서비스 질 향상
- 위탁사무의 내용
 - 자활근로 사업비 집행
 -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 따른 정산 보고(사업종료 후 30일 이내)

-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9. 12. 31.(1년간)
- 선정방식 : 재계약
- 소요예산 : 1,034백만원(국 930, 도 52, 시 52)

4. 검토 의견

- 이 동의안은 서산시 자활근로 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(2024. 12. 31.)됨에 따라 재계약에 앞서 「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.
- 다만, 수탁기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갖춰졌거나, 부실한 관리·감독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민간위탁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는 바,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·재정적 지원과 함께 철저한 관리·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